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014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석경수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9.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9. 7. 3. 접수 제6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① 2016. 2. 23.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7. 2. 22.(이후 2020. 2. 21.까지 연장되었다), ② 2016. 2. 23.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22.(이후 2019. 11. 21.까지 연장되었다)로 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B는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 1) B는 2019. 6.경 중소기업은행과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24. 중소기업은행에 304,159,500원을, 2019. 10. 25. C은행에 222,254,4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 1) 피고는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B에 약 7억 원 상당의 에이치빔(H-beam) 등을 공급하여 약 1억 8,0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B는 2019. 7.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62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②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B는 중소기업은행과 C은행에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가까운 장래에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2019. 10.경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이 법원의 D조합, E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D조합이 2016년경 B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제4부동산(경남 의령군 F 학교용지

117㎡)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이 1,676,016,16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 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채권자	내용	금액(원)	참조
1	D조합	잔존대출금	996,550,000	D조합의 회신결과
2	기업은행	운전자금(일반)	350,000,000	E기관의 회신결과
3	기업은행	시설자금(일반)	66,000,000	
4	기업은행	신용카드채권	1,000,000	
5	C은행	구매자금대출	256,000,000	
6	G은행	운전자금(일반)	85,000,000	
7	H	이행지급보증	61,000,000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종합통장대출)	34,000,000	E기관의 회신결과
9	경남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	85,000,000	
		합계금	1,934,55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제4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시가도 위 2016년경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제4부동산은 그 면적이 117㎡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함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피고에게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시세가 약 22억 원 상당이고, B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예금잔고와 기계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2018년 대차대조표 상 B가 약 4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앞서 인정한 1,676,016,160원을 넘어 22억 원이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예금 잔고도 미미한 수준이며(이 법원의 G은행, C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참조), 201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실제로 B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B가 실제로 피고 주장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는 B가 여전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2020. 8. 3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B는 2020. 6. 5. 폐업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B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5.경까지 B에 에이치빔(H-beam) 등을 납품하여 그 미수금이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바, 당시 B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이후에도 B에 추가로 1,400만 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B에 추가로 1,4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가 B에 1,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욱,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목록

1. 경남 의령군 I 공장용지 7,126㎡

2. 경남 의령군 J 공장용지 802㎡

3. 경남 의령군 I, J

[도로명 주소]

경남 의령군 K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3.6㎡

부속

철근콘트리트구조 및 벽돌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1층 137.76㎡

2층 145.86㎡

4. 경남 의령군 F 학교용지 117㎡. 끝.